

근로연계복지 (WELFARE-TO-WORK) 규정을 지키고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

수혜자에 대한 지시 사항: 근로연계복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귀하의 가족은 적은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본 양식을 작성하시어 근로연계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연계복지 담당자에게 작성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대신에, 전화를 걸어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담당자의 주소나 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 카운티에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_____ .

근로연계복지 규정을 지키고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연계복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카운티의 지시에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 규정을 지키고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한 계획”을 본인이 서명한 날짜로부터 최대 30일간 또는 활동 기간 동안, 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배정된 활동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금 보조금을 제거 시킨 그 활동의 기간보다 더 긴 활동을 하라고 카운티가 내게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 만일 카운티가 내게 전에 요청한 활동이 더 이상 없거나 내게 맞지 않는 경우, 현금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성명 (정자로 기재):	서명:	
케이스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SSN):	전화 번호: ()	날짜:
근로연계복지 담당자 이름 (정자로 기재):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으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복지권 기관

지역법률구조사무소

전화 번호: ()	전화 번호: ()